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70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이수진 · 박희승 · 임미애
최혁진 · 김남희 · 장종태
서영교 · 이개호 · 김병주
서미화 · 전진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4년에 사상 최고로 외국인 환자 방문객 수가 117만명을 기록하여 2023년 60만명에서 거의 두 배가 증가할 정도로 한국 의료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다만, 외국인환자의 경우 국내 체류 기간에 제한이 있어 국내 의료 이용 사전·사후관리가 중요하나, 현행법상 국내·외 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만 허용하고 있어 국내 의사가 비대면으로 외국인환자를 직접 진료함으로써 외국인환자에 대한 국내 진료 사전·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한편 2025. 12. 23. 개정 공포(법률 제21238호)된 「의료법」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함에 따라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환자의 특성에 맞는 비대면 진료의 범위, 비대면 진료 수행기관 및 그 절차, 방법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에 한하여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도 의료 해외진출 주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신고 대상 확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절한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 성과, 운영 현황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의료기관 개설자뿐만 아니라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

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유선·무선·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위하여 비대면 진료(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과 달리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

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라.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 및 비대면 진료의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8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상법」 제170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

제4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라 한다)”를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을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유선·무선·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이하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의료법」 제34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위하여 「의료법」 제34조의7(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는 의약품 처방에 필요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4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⑥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하는 자는 이 법 및 환자 거주국 현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의 세부적인 실시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8호 중 “제16조”를 “제16조 및 제16조의2”로,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 및 비대면 진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u>개설자</u> 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 <u>다음 각</u> <u>호의 자</u> ----- -----.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u>의료기관의 개설자</u>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u>설립된 비영리법인</u> 3. 「상법」 제170조에 따라 <u>설립된 회사</u> ② <u>제1항제1호</u> -----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u>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u>)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u>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u>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의료법」 제33조	제16조(<u>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u>) ① ----- -- ----- ----- ----- -----

현행	개정안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 ----- <u>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이라 한다)-----.</u>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u>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u> 를 하는 자 및 국외에 있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② <u>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을</u> ----- ----- ----- -----.
③ <u>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u> 의 방법과 절차 및 시설·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u>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u> ----- ----- -----.
<u><신설></u>	<u>제16조의2(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u> ① <u>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유선·무선·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사</u>

현행	개정안
	<u>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이하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라 한다)을 할 수 있다.</u> <u>② 「의료법」 제34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u> <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위하여 「의료법」 제34조의7(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는 의약품 처방에 필요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u> <u>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⑤ 제4항에 따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받</u>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4조(등록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4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⑥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하는 자는 이 법 및 환자 거주국 현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의 세부적인 실시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등록의 취소) ① ----- ----- ----- ----- ----- -----.

현행	개정안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6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u>외국인환자 사 전·사후관리</u> 를 한 경우	8. 제16조 및 제16조의2----- ----- <u>외국인환자 비 대면 협진 및 비대면 진료</u> ---
9. ~ 10. (생략)	9. ~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